

(報 告)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825
----------	-----

1999년 9월 7일

1. 제안이유

- ◎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가 전면 재조정됨에 따라
- ◎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을 재조정하여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◎ 제2조(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)
 - 기획총무위원회 → 행정경제위원회
 - 사회경제위원회 → 문화복지위원회
 - ※ 도시건설위원회 → 현행유지
- ◎ 제3조 제2항(상임위원회 소관 변경)
 - 행정경제위원회 : 공보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, 행정국(총무, 기획예산, 시민봉사, 정보통신), 경제통상국(세정, 회계, 지역경제, 산업지원, 국제통상, 실업대책), 근로자종합복지관, 농수산물유통사업소, 농업기술센터

- 문화복지위원회 : 문화복지국(사회복지, 여성복지, 문화체육, 위생), 보건소(수정·중원·분당), 환경녹지사업소(환경녹지, 공원관리, 청소),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, 영생관리사업소, 문화정보센터
- 도시건설위원회 : 도시주택국(도시, 도시개발, 주택, 건축), 건설교통국(재난재해, 도로, 교통행정), 상하수도사업소(업무, 수도, 정수, 하수처리), 차량등록사업소

3. 검토의견

- ◎ 지방행정조직 개편안 승인에 따라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서,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- ◎ 향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
- ◎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.